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-147호

「우편법 시행령」 제12조, 「국제우편규정」 제9조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1조2에 따른 「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(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6-14호)」에 따라 국제선편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0. 28.

우정사업본부장

1. 개요

「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6-14호, 2026.4.1.)」 상 국제선편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에 대해 국가별 적용 수수료를 조정하여 공고함으로써 원활한 국제우편물 운송 추진

2. 운영 내용

가. 적용 우편물 : 국제선편소포

나. 변경 수수료 적용일 : '26. 11. 16.(월)

3. 문의: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(044-200-8288)

부 칙

이 공고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붙임

국가별 국제선편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 (11.16.시행)

국가명	적용 수수료(원)		국가명	적용 수수료(원)	
	1kg당	100g당		1kg당	100g당
남아프리카 공화국	-	-	인도	-	-
네덜란드	-	-	인도네시아	-	-
노르웨이	-	-	일본	-	-
독일	-	-	중국	-	-
말레이시아	-	-	캐나다	400	40
미국	500	50	대만	-	-
방글라데시	-	-	태국	100	10
베트남	-	-	폴란드	-	-
스웨덴	-	-	프랑스	-	-
스페인	-	-	핀란드	-	-
싱가포르	-	-	필리핀	-	-
아일랜드	-	-	호주	400	40
영국	-	-	홍콩	-	-